

의안번호	2203155
의 퇴 인	남인순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5.
추 계 번호	24C3122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9조 1,282억원(연평균 3조 8,256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생계급여·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(안 제8조제2항, 제12조의3제2항 등)	34,355	36,202	38,150	40,204	42,370	191,282	38,25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¹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생계급여의 내용 등)	○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유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음	의무규정
2	안 제12조의3(의료급여)	○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유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음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(생계급여의 내용 등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예상 추가 편입 가구 수에 최근 추이를 반영하여 추계
2	안 제12조의3(의료급여)	○	

1) 개정안에는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급여는 2015년 맞춤형 급여로 전환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정수반요인에 포함되지 않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엄밀한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개정안 시행 시 신규 수급권자로 포함될 가구 수와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해당 정보가 부재
 - 개정안 시행 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를 둔 사람이 신규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,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대상가구의 신청에 의해 수급권 판정 및 선정이 이루어지므로,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그 수와 소득분포를 알 수 없음
- 다만,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의 경우 급여 신청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된 가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정안 시행 시 추가 산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를 추정하고 있고, 의료급여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및 주거급여·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정에서의 실적치를 바탕으로 개정안 시행 시 추가 산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를 추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서는 이를 준용하여 추가 가구 수를 산정
 -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 - 의료급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중
 - (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)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인 포함된 경우,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, 수급(권)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, 보호종료아동인 경우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생계급여 신규 수급 가구 수”에 “월 평균 지급 단가” 및 “지급 개월 수(12개월)”를 곱하여 산출
 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안 제8조제2항 등)

□ (신규 수급 가구 수) 보건복지부가 산출한 2023년 말 기준 신규 수급 예상 가구 수에 2017~2019년 수급가구 수의 연평균 증가율 및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

-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폐지 시 신규 수급 가구 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2023년에 ‘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’ 요건으로 인해 생계급여의 수급 중지 또는 탈락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 수(2,541가구)를 활용하였으므로, 본 추계서 역시 해당 수치를 활용²⁾
- 생계급여는 2020년부터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,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을 인하, 선정기준 변화 등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제도개선이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던 2017~2019년의 수급가구 수 변동률(2.13%)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대상 가구 수를 산출
 - － 「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2024~2026)」에 따르면, 정부는 생계급여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5%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과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의 복합적 영향에 따른 생계급여 신규 수급 가구 수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, 본 추계서에서는 생계급여 대상 확대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음
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 신규 수급가구에 해당하는 전체 가구가 실제 수급자로 편입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함으로 인해 12개월 기준으로 당초 예상한 가구 수의 65% 수준에서 수급이 발생하였으므로, 이를 조정계수로 적용

2) 실제 연말 기준 가구 수와 연평균 가구 수는 상이할 수 있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연말 기준 가구 수가 연중 가구 수와 동일하다고 가정

□ (월 평균 지급 단가) 보건복지부가 산출한 대상 가구의 2025년 평균 수급액 추정치(월 474,931원)에 기준 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 인상률 추정치를 적용하여 추계

-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5년까지는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률을 적용하고, 2026년 이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하여 과거 추세를 적용
 -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에 따라³⁾ 2026년까지는 2021~2025년의 증가추세에 따라, 2027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의 과거 증가추세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
 - 생계급여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5%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단가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

□ 추계 결과,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11억원(연평균 122억원)으로 추계됨

- 2025년도 예산안 상의 국고보조율(83.61%)을 적용한 결과 국비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11억원(연평균 10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대상 가구 수(가구, A)	2,706	2,764	2,823	2,883	2,944	-	-
평균 지급 단가(원, B)	509,241	530,494	552,633	575,696	599,722	-	-
추가재정소요 (억원, $A \times 65\% \times B \times 12\text{개월}$)	107	114	122	129	138	611	122
국비	90	96	102	108	115	511	102
지방비	18	19	20	21	23	100	20

주: 국비는 2025년 예산안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(83.61%)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에 따르면, 기본적으로 차년도(n+1년) 기준 중위소득은 당년도(n년)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활용 가능한 최신 3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하여 산출하되,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결정함

나.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안 제8조제2항 등)

□ (신규 수급자 수) 보건복지부가 산출한 2024년 기준 신규 수급 예상 가구 수(33.8만 가구)에 2017~2019년 수급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

○ 보건복지부는 「2021~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」에서 제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사각지대 가구 수(46만 가구)를 기초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 시의 실적 추세와 2021~2023년 제도개선으로 이미 의료급여 수급자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신규 수급 가구 수를 33.8만 가구로 예상⁴⁾

○ 의료급여의 2023년 수급 가구 수 대비 수급자 수 비율(1.2배)을 적용하여 신규 수급 가구 수를 신규 수급자 수로 전환한 후, 2023년 종별 수급자 수 비율(1종 77.1%, 2종 22.9%)을 적용하여 종별 수급자 수를 산출한 후, 추계기간 종별 신규 수급자 수가 2022~2023년 의료급여 종별 수급자 수의 변동률(1종 0.4%, 2종 △2.7%)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⁵⁾

□ (월 평균 지급 단가)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서상의 의료급여 종별 단가(1종 911.5만원, 2종 257.8만원)에 2022~2024년 예산서상의 단가 인상률(1종 4.7%, 2종 10.3%)을 적용하여 추계

□ 추계 결과,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9조 671억원(연평균 3조 8,134억원)으로 추계됨

○ 2025년도 예산안 상의 국고보조율(75.7%)을 적용한 결과 국비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4조 4,338억원(연평균 2조 8,868억원)으로 추계됨

4) 고소득·고재산자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

5) 수치는 모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는 '복지로' 포털에 탑재되어 있는 복지통계(원자료: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이음))에서 추출하여 계산(단, 타법에 따른 수급자 수는 제외)

[표 4]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구 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대상자 수(명, A)	1종	314,941	316,353	317,771	319,195	320,626	-	-
	2종	87,943	85,571	83,263	81,017	78,831	-	-
평균 지급 단가(천원, B)	1종	1,000	1,047	1,097	1,149	1,203	-	-
	2종	314	346	382	421	465	-	-
추가재정소요(억원, A × B)		34,247	36,088	38,029	40,075	42,232	190,671	38,134
국비		25,925	27,319	28,788	30,337	31,970	144,338	28,868
지방비		8,322	8,769	9,241	9,738	10,262	46,333	9,267

주: 국비는 2025년도 예산안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(75.7%)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급여를 신규 수급할 가구 수와 해당 가구의 소득정보가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신규 수급자 수와 평균 지급 단가를 추정한 것으로, 실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